

## - 울산경제자유구역 -

# 주택 등 건설사업 통합심의 추진

### I 추진배경

- 주택 등 건설사업 인·허가 전 각종 심의절차 이행기간 장기간 소요, 금융비용 증가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시장 불안정
- 주택건설사업 심의절차기간 단축 위해 시 통합심의 시행(22.10월)

### II 관련근거

- 주택법 대상(사업계획승인)
  - 「주택법」 제18조(사업계획의 통합심의)
  - 「도시교통정비법」 제17조(교통영향평가서 심의)
  - 「경관법시행령」 제23조(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건축법 대상(건축허가)
  - 「토지인허가간소화법」 제12조(통합심의위원회)

### III 추진계획

- (주관부서) 경자청 미래개발부(민원팀)
- (위원회 명칭)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건축·주택 통합심의위원회
- (설치근거) 「주택법」 제18조(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)  
「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법」 제12조(통합심의위원회)
- (적용대상)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
- (통합 심의대상)
  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
  - ②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
  - ③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심의
  - ④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심의

⇒ ③건축+④경관 : 경자청 건축(경관) 공동위원회 심의(현행)

⇒ ③건축+④경관 이외 2개 분야 이상 심의 시 건축·주택 통합심의

### ○ (위원회 구성)

- 구성인원 : 15 ~ 25명

- 구성방법 : 건축 및 경관 위원은 경자청 건축 및 경관 위원회에서 자체 추천하고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을 받은 위원 및 소속 공무원(위원회별 5명 이상)으로 통합심의 위원회 구성

※ 도시계획 및 교통위원 추천 시 위원회 담당 부서장 당연직 추천

- 위 원 장 : 개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

- 부위원장 :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

### ○ (운영방법)
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- 회의개최 7일 전 회의 일시, 장소, 상정 안건 등 위원 통보

- 기타 심의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「주택법」 및 「울산광역시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운영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### ○ (시행시기) '23. 3. 2. 이후 신청 건부터